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0년도 제38회 법원 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면접시험

4.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 고등고시	법원사무 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 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 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 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65점 (Level 2)	625점
				340점 (2018. 5. 12. 이후 에 실시된 시험)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	35점	350점	37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43점 (Level 2)	375점
				204점 (2018. 5. 12. 이후 에 실시된 시험)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제2019 - 230호 “2020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7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 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별도로 안내한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6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성적이 발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점수(등급)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기간(2020. 8. 17.(월) 09:00 ~ 8. 21.(금) 18:00) 내에 반드시 그 점수(등급)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등록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 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8회 법원행 정고등 고시	접수기간: 5. 28. ~ 6. 8. (취소마감일: 6. 11.)	제1차시험	7. 28.(화)	8. 22.(토)	9. 10.(목)
		제2차시험	9. 10.(목)	10. 23.(금) ~10.24.(토)	11. 24.(화)
		인성검사	11. 24.(화)	11. 26.(목)	
		제3차(면접)시험	11. 24.(화)	12. 2.(수)	12. 11.(금)